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10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○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○ 도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(안 제3조)

○ 건전한 지역개발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등(안 제4조)

○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(안 제5조)

○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운영 등(안 제6조)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충청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.
- 다만, 제3조(도의 책무)에 있어 시·군의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실적이 우수한 시·군에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기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됨.
- 안 제3조 제4항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방안,  
안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위반시 조치사항  
안 제5조 제2항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.
- 안 제11조 제1항 중 “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”하고와 관련 그 시기가 부정확하며, 동조 제2항 중 “회의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”라는 규정은 회의 준비 및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적정한 통지 기일을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-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